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172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회의정보
과학기술기 본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0273	최수진의원	'24. 6. 10.	-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7.1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및 축조심사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2.26.) 상정 및 축조심사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4.16.) 상정 및 축조심사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5.8.) 상정 및 축조심사
	2206432	정부	'24. 12. 12.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2.25.)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2.26.)

				상정 및 축조심사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4.16.) 상정 및 축조심사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5.8.) 상정 및 축조심사
	2206702	이해민의원	'24. 12. 1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2.25.)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2.26.) 상정 및 축조심사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4.16.) 상정 및 축조심사 -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5.8.) 상정 및 축조심사
	2210675	황정아의원	'25. 6. 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7.4.)

나.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7.)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7. 7.)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기획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속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고,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연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전기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3항·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사업 환경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 신설).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호, 제6433호 및 제67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의견을”을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다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개발사업(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 중인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0일 이내에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사업계획서 검토는 “3월 15일”을 “4월 30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u>의견을</u>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 ----- ----- ----- ----- <u>의견 및</u> <u>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u> <u>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u> <u>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u> <u>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u> <u>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u> <u>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u> <u>하 이 조에서 같다)를</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제1항에 따른 <u>사업계획서와</u> ----- ----- ----- ----- -----

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
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
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 9. (생략)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

1. ~ 9.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⑦· ⑧ (생 략)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

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
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
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
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
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
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
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

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